발 간 등 록 번 호
11-1352000-000882-10

2013년도
기부식품제공사업 안내

보건복지부
MINISTRY OF HEALTH & WELFARE

Contents

Ⅰ 개요 / 1

Ⅱ 기부식품제공사업 관리 / 9

1. 기부식품제공사업 신고제도 ····· 11
2. 기부식품 이용자 관리 ····· 14
3. 기부식품 등의 관리 ····· 16
4. 기부식품 제공사업장 인력관리 ····· 22
5. 기부식품 사업자 신고의 철회 · 폐업 ····· 24
6. 운영지원 및 지도 · 감독 ····· 25
7. 시정명령, 사업장 폐쇄 등 행정처분 ····· 26

Ⅲ 기 타 / 31

1. 붙임자료 ····· 33
   - 〈붙임 1〉 사업자 신고서 ····· 34
   - 〈붙임 2〉 기부식품제공사업 계획서(예시) ····· 36
   - 〈붙임 3〉 사업자 신고증 ····· 37
   - 〈붙임 4〉 기부식품제공사업 이용신청서 ····· 39
   - 〈붙임 5〉 기부식품 영수증(예시) ····· 40
   - 〈붙임 6〉 기부금 영수증 ····· 41
   - 〈붙임 7〉 기부식품 모집 및 제공 명세서 ····· 42
   - 〈붙임 8〉 기부식품 위생관리 요령 ····· 43
   - 〈붙임 9〉 2013년 사회복지생활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 53
   - 〈붙임 10〉 철회(폐업) 신고서 ····· 55
2. 관련 법령 ····· 57

Ⅰ. 개 요

Ⅰ 개요

1 목적 및 연혁

가. 목적

○ 기부식품제공사업은 경제위기로 저소득층 결식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결식아동, 독거노인, 재가장애인 등 소외계층에게 기부식품을 제공함으로써 민간사회안전망 역할을 수행

○ 기부식품제공사업의 활성화 및 식품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2006. 9. 25 시행)에서 규정한 기부식품제공사업 운영기준 등과 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가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안내

나. 연혁

○ '98. 1 : 푸드뱅크 시범사업 실시(서울, 부산, 대구, 과천)
○ '00. 5 : 한국사회복지협의회를 전국푸드뱅크로 지정(보건복지부)
○ '01. 8 : 전국푸드뱅크 홈페이지 구축·운영(www.foodbank1377.org)
○ '02. 7 : 「기부식품관리시스템」 구축·운영
○ '06. 3 :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 공포
○ '06. 9 :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시행
○ '09. 9 : 기부식품 중앙물류센터 개소(대전 유성구 대정동 302-1)
○ '12.12 : 푸드뱅크 및 푸드마켓 425개소 운영(전국 1개소, 광역 17개소, 기초 407개소)

2 사업추진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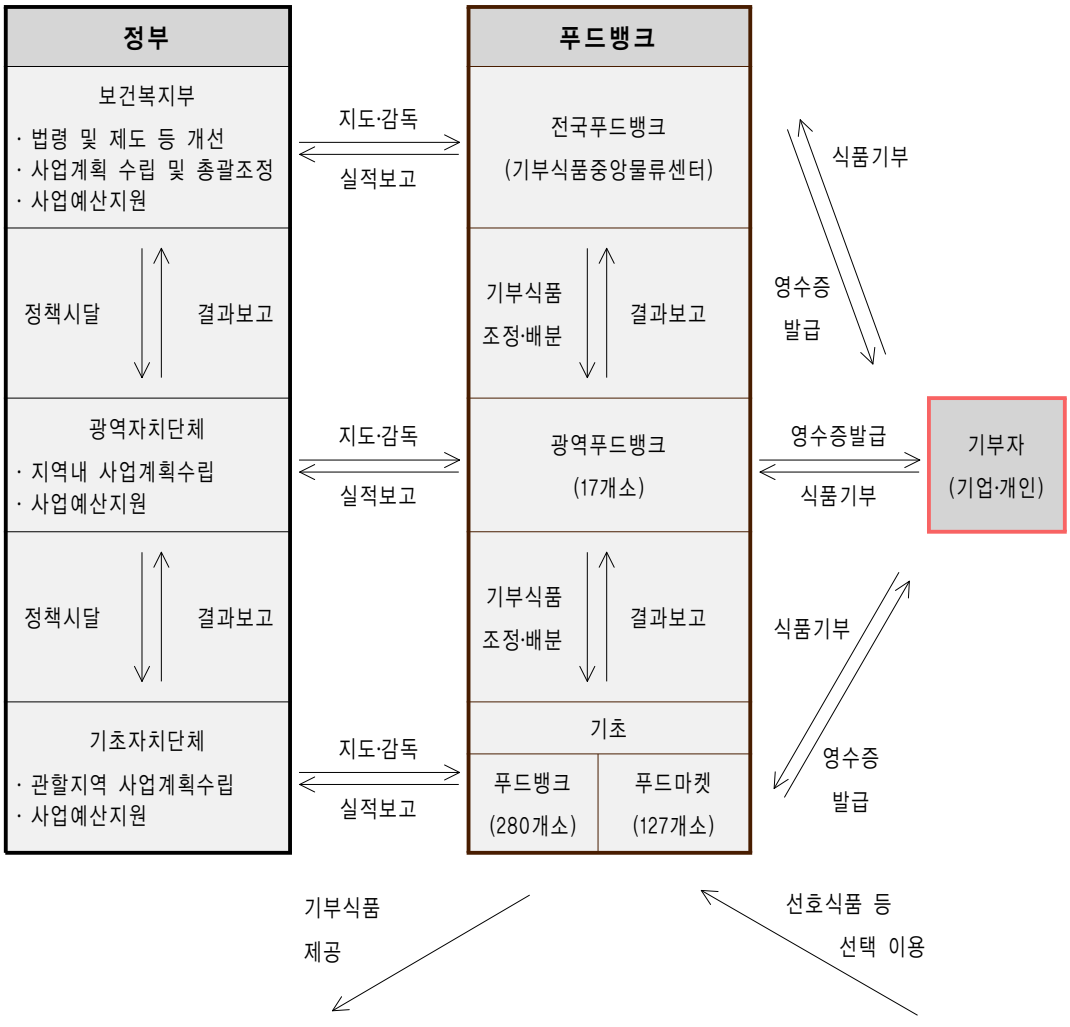

저소득 빈곤계층 (결식아동, 독거어르신, 재가장애인, 조손가정 등)에게 자원봉사자, 공공근로자 등이 식품 등 전달

활동력이 있는 저소득 빈곤계층 이용자로 본인이 방문하여 식품 등 선택

3 운영형태

가. 전국푸드뱅크

○ 운영목적

- 식품나눔 문화 활성화, 기부식품의 전국적인 모집 및 배분, 사업프로그램의 개발 및 집행, 기부식품 제공사업자 간 협력체계 구축 등의 지원업무를 전담
- 보건복지부에서 한국사회복지협의회를 위탁·운영기관으로 지정('00)

○ 역할

- 식품 및 생활용품 등을 기부받아 광역푸드뱅크, 기초푸드뱅크·마켓을 통하여 기부식품을 배분하고, 지역별 편차 해소를 위한 균형배분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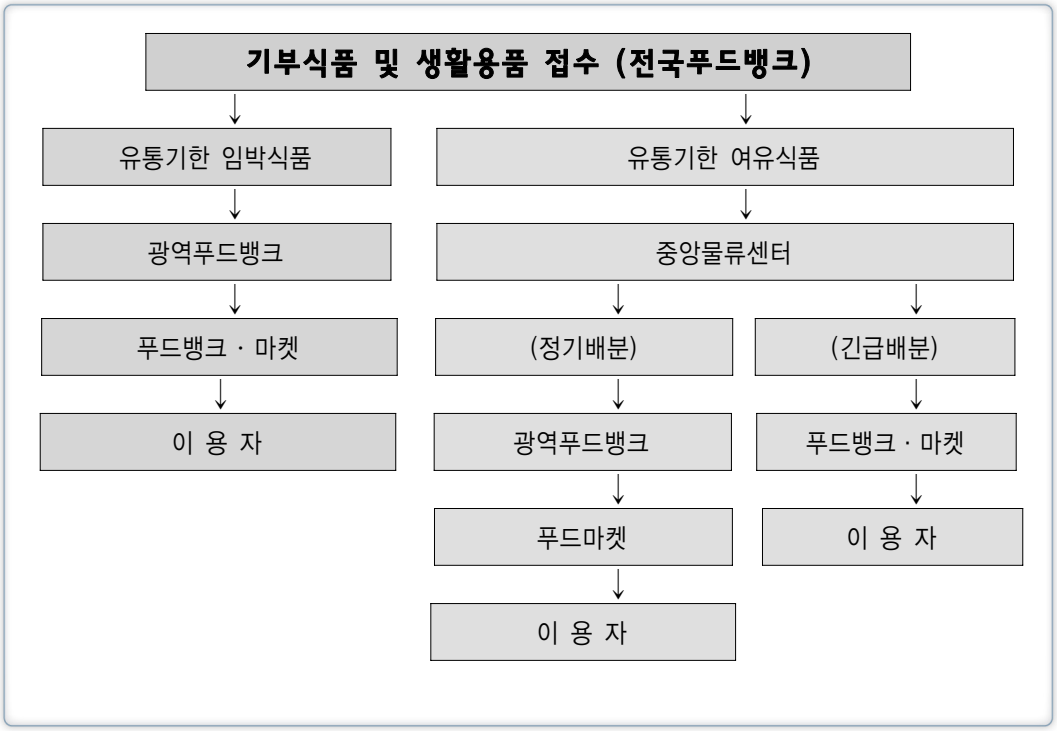

- 기부식품 제공사업 종사자 교육·훈련
- 중앙물류센터, 기부식품관리시스템(FMS) 운영
- 지역사회 식품나눔 네트워크 구축 및 나눔 활성화를 위한 홍보
- 기부식품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전국보험 가입

나. 광역푸드뱅크

○ 운영목적

- 광역 단위의 기부식품 모집 및 배분, 기초단위 사업장간 협력체계 구축 등을 추진함으로써 전국단위 사업의 효율성을 도모
- 각 광역 지방자치단체에서 신고사업자 중 광역푸드뱅크를 지정 또는 위탁 운영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자 미신고시 신고 필요

○ 역할

- 시·도 단위 기부식품 제공사업자 운영・관리 지원
- 지방자치단체 및 전국푸드뱅크와의 협력을 통한 기부식품 모집 및 균형배분 지원
- 시·도 단위 식품 및 생활용품 기부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이용자 상담
- 사업계획 수립 및 실적보고(관할 시・도 및 전국푸드뱅크)

다. 기초푸드뱅크 및 기초푸드마켓

○ 지역 내 식품나눔 네트워크 구축 및 홍보를 통한 기부식품 모집・관리・배분

○ 지역 내 기부식품 이용자 발굴·선정

○ 연도별 사업계획(후원위원회 포함), 분기별 사업실적 및 예・결산 보고

○ 전국푸드뱅크 및 광역푸드뱅크와의 협력

※ 동일한 운영주체에서 푸드뱅크 및 푸드마켓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으나, 각 사업장이 지켜야할 신고기준, 운영방법 등은 개별적으로 준수해야함

4 주요 현황

가. 운영형태별

구 분	계	푸드뱅크				푸드마켓
		소 계	전국푸드뱅크	광역푸드뱅크	기초푸드뱅크	
개 소	425	298	1	17	280	127

나. 지역별(전국푸드뱅크 제외)

(단위 : 개소)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광역 푸드뱅크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7
기초 푸드뱅크	27	17	11	10	14	7	6	1	52	18	21	18	14	25	18	18	3	280
기초 푸드마켓	32	12	8	15	3	8	2	1	16	1	5	6	5	3	4	4	2	127
계	60	30	20	26	18	16	9	3	69	20	27	25	20	29	23	23	6	424

다. 운영주체별

(단위 : 개소, %)

운영 주체	법인									자원봉사센터[4]	시군구[5]	기타[6]	계
	사회복지법인				종교법인	기타법인[3]							
	이용시설	생활시설	단체[1]	소계	종교단체[2]	이용시설	생활시설	단체	소계				
개소	123	33	114	270	29	38	11	54	103	10	10	3	**425**
비율 (%)	28.9	7.8	26.8	63.5	6.8	8.9	2.6	12.7	24.2	2.4	2.4	0.7	**100**

1) 단체 : 협의회, 협회, 복지회 등　2) 종교단체 : 교회　3) 기타법인 : 사단법인, 재단법인, 학교법인
4) 자원봉사센터 : 행정안전부 운영　5) 시군구 : 시군구 직영 푸드뱅크　6) 기타 : 개인

Ⅱ. 기부식품제공사업 관리

Ⅱ 기부식품제공사업 관리

1 기부식품제공사업 신고제도

가. 기부식품제공사업의 범위

○ 기부식품의 모집·관리 및 제공
○ 식품기부를 활성화하기 위한 홍보
○ 그 밖의 기부식품 제공과 관련된 부수사업

나. 기부식품 사업자(법 제2조 제5호, 시행령 제2조)

① 기부식품 사업자는 기부식품제공사업을 계속적으로 영위하는 자로서,
② 모집한 기부식품의 100분의 80이상을 이용자(사업자가 속하는 기관·단체가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의 이용자를 제외한다)에게 제공하고,
③ 매주 3회 이상, 매주 60인 이상을 대상으로 기부식품을 제공해야 함

※ 모집한 기부식품의 100분의 20미만은 사업자가 속하는 기관·단체의 목적사업인 재가복지사업에 제공할 수 있으나, 기존 국비(지방비) 지원 이외에 사업(대상자) 추가 확대를 위해서만 사용 가능

참고 : 법적 정의(법 제2조)

1. “식품”이라 함은 「식품위생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식품*을 말한다.
   * ‘식품’이란 모든 음식물(의약으로 섭취하는 것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2. “기부식품”이라 함은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지원할 목적으로 제공된 식품을 말한다.
3. “이용자”라 함은 기부식품을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4. “제공자”라 함은 기부식품을 이용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5. “사업자”라 함은 제공자 중 제4조의 규정에 따른 기부식품제공사업을 계속적으로 영위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말한다.

다. 신고의 종류 및 요건

① 임의신고(법 제3조 제1항, 시행령 제4조 제1항 및 별표 1)
- 신고대상 : 기부식품 제공사업을 하려는 자는 아래의 임의신고 요건을 갖추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 신고할 수 있음

- 임의신고 요건 : 보관창고, 운반차량(냉장·냉동 적재고), 냉장·냉동시설 보유

임의 신고 시설과 설비 기준

1. 보관창고

가. 기부식품을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창고를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보관창고는 사업장 소재지에서 떨어진 곳에 설치할 수 있다.

나. 보관창고는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다른 용도로 사용 중인 창고를 분리하거나 구획하여 이용할 수 있다.

2. 운반차량

가. 냉동시설이나 냉장시설을 갖춘 적재고가 설치된 운반차량을 1대 이상 갖추어야 한다.

나. 냉동시설이나 냉장시설로 된 적재고의 내부는「식품위생법」제7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고시한 식품의 기준과 규격에 따른 식품의 보존 및 보관 기준에 맞는 온도(이하 "적정온도"라 한다)를 유지하여야 하며, 시설 외부에서 내부의 온도를 알 수 있도록 온도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 적재고는 식육 등의 피가 흘러나오지 아니하여야 하고 냄새를 방지할 수 있는 구조여야 한다.

3. 냉장(냉동)시설

적정온도가 유지될 수 있는 냉장시설이나 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② 당연신고(법 제3조2항, 시행령 제4조 제2항 및 별표 2)

- 신고대상 : 매년 제공하는 기부식품의 장부가액이 3억원 이상인 사업자는 당연신고 요건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 신고(의무 부과)
  - 당연신고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신고 없이 기부식품 제공사업을 영위할 경우, 해당 지자체에서는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법 제14조 제1항) 등 적절한 관리감독을 실시

※ 임의신고 사업자가 연간 기부식품 장부가액 3억원 이상을 제공할 경우 당연신고로의 변경이 필요하며, 당연신고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 신고요건

⑴ 시설·설비 기준 : 16.5제곱미터 이상의 보관창고, 운반차량(냉장·냉동 적재고), 1,000리터 이상의 냉장·냉동시설 보유

⑵ 인력기준 : 전담인력 1인 이상 및 자원봉사자 등 보조인력 2인 이상

당연신고 시설·설비 및 인력기준

1. 보관창고
기부식품을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면적이 16.5제곱미터 이상인 창고를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보관창고는 사업장 소재지에서 떨어진 곳에 설치할 수 있으며,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다.

2. 설 비
가. 운반차량
(1) 냉동시설이나 냉장시설을 갖춘 적재고가 설치된 운반차량을 1대 이상 갖추어야 한다.
(2) 냉동시설이나 냉장시설로 된 적재고의 내부는 적정온도를 유지하여야 하며, 시설 외부에서 내부의 온도를 알 수 있도록 온도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3) 적재고는 식육 등의 피가 흘러나오지 아니하여야 하고 냄새를 방지할 수 있는 구조여야 한다.
나. 냉장(냉동)시설
적정온도가 유지될 수 있는 1,000리터 이상의 냉장시설이나 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 인 력
기부식품제공사업을 수행하는 전담인력 1인 이상 및 자원봉사자 등 보조인력 2인 이상이 있어야 한다.

라. 신고절차

① 신고하려는 사업자는 신고유형(임의신고, 당연신고)에 따른 신고요건을 갖춘 후 사업자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에 아래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를 모두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 [붙임 1] : 사업자 신고서(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 사업장의 운영주체 변경시에는 사업자 신고절차에 준하여 신고

(1) 정관(법인인 경우 기부식품제공사업의 근거가 포함된 내용)

(2) 사업계획서(이용자로부터 대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및 기부식품 기부처 발굴 계획, 기부식품 이용자 현황 등을 포함)

* 모집과정에서 소요되는 직접경비(기부식품의 차량적재와 운반에 소요된 비용, 기부식품의 포장비용)를 초과할 수 없음

※ [붙임 2] : 기부식품제공 사업계획서(예시)

(3) 사업장을 설치할 토지와 건물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각각의 서류

(4) 시행령의 신고요건(시설·설비 기준 등)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각각의 서류

※ 신청인이 동의시 법인등기부등본은 행정정보 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해 확인하고, 신청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별도 첨부

② 담당공무원은 신고요건, 관련서류 등 제반사항을 검토하고, 사업자 신고증을 신고인에게 교부

※ [붙임 3] : 사업자 신고증(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

- 운영형태(푸드뱅크, 푸드마켓)에 따라 사업 수행능력을 전반적으로 검토 필요

※ 푸드마켓의 경우 전용면적 유무, 장애인 편의시설 등을 고려

마. 추가 조치사항

○ 사업자신고를 수리한 시장·군수·구청장은 신규 사업자 신고사실(사업장 명칭, 대표 성명, 소재지 등)을 관할 시·도 및 보건복지부에 신속히 보고하고, 해당 지역 광역푸드뱅크에서는 동 사실을 전국푸드뱅크에 보고

2 기부식품 이용자 관리

가. 이용자 발굴

○ 지역 내 결식문제를 겪고 있는저소득층을 파악하여 이용자를 적극 발굴

○ 지방자치단체 희망복지지원단, 사회복지협의회 좋은 이웃들, 기타 민간 복지단체 등과의 연계를 통한 복지 소외계층을 발굴

나. 이용자 선정 : 개인이용자 우선 지원

○ 개인이용자를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기부식품이 여유가 있는 경우 시설 및 단체를 지원

- 이용대상자에게 기부식품 제공사업 신청서를 받아 보관

※ [붙임 4] : 기부식품 제공사업 이용신청서

○ 개인이용자 중 긴급지원대상자, 차상위계층, 국민기초생활수급 탈락자를 우선적으로 지원

- 다만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가족구성원수, 경제활동, 학비 등을 감안하여 상담을 통하여 기부식품 제공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개인이용자의 50% 범위 내에서 제공

※ 이용자 선정시 기부식품 지원 필요성 여부를 지자체 희망복지지원단과 협의하되, 지자체에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대상자(저소득층 등)가 있는 경우 대상자의 동의를 얻은 후 사업자에게 명단 제공 가능

○ 정부지원을 받는 사회복지시설, 실비를 받는 노인요양병원 등에는 원칙적으로 제공 금지

- 다만, 기부자가 배분대상을 지정하는 지정기부시, 급히 배분해야 할 대규모의 신선식품 기부시에는 예외적으로 제공이 가능하며,
- 지자체의 확인을 통하여 정부지원이 미흡하고, 식품확보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무료급식소, 지역아동센터 등에는 제공 가능

○ 운영주체의 바자회·행사 등 개최, 종교·정치적 목적을 위해서는 기부식품 제공을 금지

다. 이용자 변경 : 기부식품 제공 기간 설정 · 운영

○ 이용자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6개월, 9개월, 1년 단위로 제공기간을설정해 기부식품을 제공. 다만 상담을 통하여 기부식품이 더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연장 가능

- 시설·단체에 기부식품을 제공하는 경우 1년 단위로 교체하며, 개인이용자로의 교체를 우선적으로 고려

○ 제공기간 설정 기준

⑴ 1순위(1년) : 긴급지원대상자, 국민기초생활수급 탈락자

⑵ 2순위(9개월) : 차상위계층

⑶ 3순위(6개월) : 기부식품 제공의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되는 저소득 재가대상자

라. 기부식품 이용자 보호(법 제9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

○ 신고 사업자는 제공된 식품의 취식으로 인하여 이용자의 생명·신체에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함

※「식품기부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 · 운영 중인 기부식품제공사업자가 취급하는 기부식품에 대해서는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전국푸드뱅크에서 전국단위 일괄 생산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

3 기부식품 등의 관리

가. 기부식품 및 기부금품(후원금, 생활용품 등) 모집

○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식품 제조기업, 유통기업 뿐만 아니라 일반 기업, 국민 등의 기부 동참 유도

○ 기부모집 목표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모집활동 수행

○ 식품기부처에 대한 관리를 통한 지속적 기부 유도

나. 영수증 발급

① 기부식품 영수증 발급

- 기부식품 제공사업자는 음·식료품 제조업 등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이나 개인이 식품을 기부하였을 경우에 한해 기부식품 영수증 발급

  ※ [붙임 5] : 기부식품 영수증(예시)

- 기부식품 제공사업자가 기부자에게 발급하는 기부식품 영수증은 법인세(소득세) 산출시 전액 손비처리(필요경비) 가능

- 기부식품 영수증의 단가는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기부자의 세무회계상의 장부가액(기부물품 제조에 사용된 비용)으로 가능

참고 : 기부식품 영수증 법적 근거

○ **법인세법 시행령 제 19조(손비의 범위) :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3의2.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음 · 식료품의 제조업 · 도매업 또는 소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잉여식품을 「식품기부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제공자 또는 제공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무상으로 기증하는 경우 그 기증한 잉여식품의 장부가액(이 경우 그 금액은 제35조제1호에 따른 기부금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제35조는 지정기부금에 대한 사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 55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⑥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 중 식료품 제조업과 음료 제조업, 도매 및 소매업을 경영하는 거주자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잉여식품을 「식품기부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사업자 또는 그 사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무상으로 기증하는 경우 그 기증한 잉여식품의 장부가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이 경우 그 금액은 제79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제79조 1항은 지정기부금에 관한 사항

② 기부금 영수증 발급

- 음·식료품 제조업 또는 소매업을 하는 기업·개인이 아닌 자가 기부할 경우 또는 기부금품(후원금, 생활용품 등)을 접수하였을 경우 운영주체(법인 등)가 발급할 수 있는 기부금 영수증으로 발급

  ※ [붙임 6] : 기부금 영수증(법인세법 시행규칙 서식 63의3, 소득세법 시행규칙 서식 45의2)

- 기부금 영수증은 기부금품의 시가(시가가 장부가액보다 낮은 경우 장부가액)로 발급(법인세법 시행령 제37조)
- 운영주체에서 기부금품 영수증을 발급하더라도, 당해 기부금품은 기부식품 사업장 운영비, 기부식품 구매 등 기부식품 제공사업의 운영과 관련하여 사용하여야 함

다. 기부식품 제공

○ 매주 3회 이상, 매주 60인 이상에게 제공해야 함

○ 제공자 및 사업자는 이용자에게 기부식품을 무상으로 제공함을 원칙(법 제6조, 시행령 제6조)

- 다만, 이용자로부터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모집과정에서 소요되는 직접경비를 초과할 수 없음

  ※ 직접경비 : 기부식품의 차량적재와 운반에 소요된 비용, 기부식품의 포장비용

○ 기부식품 제공시 기부식품의 특성(개인 또는 기업으로부터 기부받은 식품), 식품의 보관 및 취식방법, 유통기한, 판매·교환 금지 등의 내용을 안내

- 이용대상자의 특성에 따라 적절한 방법을 통하여 고지하고, 안전한 취식을 위한 별도의 관리를 수행

라. 기부식품관리시스템(Foodbank Management System : FMS) 사용

○ FMS는 식품 기부자 및 이용자 관리, 기부식품 모집 및 제공내역 관리 등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운영 시스템을 제공하고, 각종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보·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전산시스템

○ 사업자는 기부식품 모집, 제공시 관련 실적을 실시간으로 FMS에 입력하여야 함

※ FMS 입력으로 기부식품 모집 및 제공 명세서를 대체할 수 있음

○ 지자체는 전국푸드뱅크 홈페이지(http://www.foodbank1377.org)에서 지역내 사업실적을 제공받을 수 있음

※ ID, PASSWARD 별도 제공(전국푸드뱅크)

마. 기부식품 모집 및 제공과정의 투명성 확보(법 제5조 제1항)

○ 기부식품 모집과 제공에 관한 장부 비치

※ [붙임 7] : 기부식품 모집 및 제공명세서(시행규칙 별지 제4호 서식)

○ 기부식품 모집시 영수증이나 그 밖에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작성・보관

○ 아래의 사항이 포함된 기부식품 모집 및 제공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

(1) 사업자 명칭과 사업장 소재지

(2) 기부식품의 종류·품목·수량, 가액(價額) 및 모집일자

(3) 기부식품 중 이용자에게 제공된 식품의 종류·품목·수량, 가액 및 제공일자

(4) 기부식품 제공자와 이용자가 개인에 해당되는지, 단체에 해당되는지의 구분

바. 기부식품 안전성 확보(법 제5조 제2항)

○ 제공자 및 사업자는 기부식품을 모집하거나 제공함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안전하게 취급하여야 함

- 기부식품 위생관리 요령(붙임 8)을 준수

○ 식품위생법상 위생 기준(식품위생법 제3조, 시행규칙 별표 1) 준수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채취·제조·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 또는 진열을 할 때에는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하여야 하며,
- 사용하는 기구 및 용기·포장 또한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다루어야 함

참고 : 식품등의 위생적인 취급에 관한 기준

1. 식품등을 취급하는 원료보관실 · 제조가공실 · 조리실 · 포장실 등의 내부는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2. 식품등의 원료 및 제품 중 부패 · 변질이 되기 쉬운 것은 냉동 · 냉장시설에 보관 · 관리하여야 한다.
3. 식품등의 보관 · 운반 · 진열시에는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이 정하고 있는 보존 및 유통기준에 적합하도록 관리하여야 하고, 이 경우 냉동 · 냉장시설 및 운반시설은 항상 정상적으로 작동시켜야 한다.
4. 식품등의 제조 · 가공 · 조리 또는 포장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은 위생모를 착용하는 등 개인위생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5. 제조 · 가공(수입품을 포함한다)하여 최소판매 단위로 포장(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도록 포장되고, 제품의 용기 · 포장에 법 제10조에 적합한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판매의 목적으로 포장을 뜯어 분할하여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컵라면, 일회용 다류, 그 밖의 음식류에 뜨거운 물을 부어주거나, 호빵 등을 따뜻하게 데워 판매하기 위하여 분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식품등의 제조 · 가공 · 조리에 직접 사용되는 기계 · 기구 및 음식기는 사용 후에 세척 · 살균하는 등 항상 청결하게 유지 · 관리하여야 하며, 어류 · 육류 · 채소류를 취급하는 칼 · 도마는 각각 구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7.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진열 ·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 유통기한 관리 : 모집가능기한 및 배분기한 준수

- 기부식품 접수시 식품별 특성을 고려하여 이용자 취식을 위한 충분한 기간을 고려하여 모집

  ※ 모집가능기한에 맞지 않은 식품기부요청이 있을 경우 동 지침을 근거로 접수를 하지 않되, 식품안전사고의 우려 등 그 사유를 충분히 설명하여 기부가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

- 신선식품의 경우 최소 7일, 음료류는 최소 10일, 가공식품·장류 등은 최소 15일의 유통기한이 남았을 경우에만 접수
- 유통기한이 적게 남은 식품(신선식품 또는 1개월 이하의 식품 등)의 경우 대규모 인원에 의해 단기간 소비가 가능한 사회복지시설·단체로 즉시 배분
- 제빵류의 경우 식품을 접수한 당일 또는 다음날 무료급식소, 지역아동센터 등 즉시 취식이 가능한 시설·단체나 개인에게 즉시 배분

〈참고〉 식품별 모집 가능기한 및 배분기한

구 분		기부 식품군	모집 가능기한	유통기한에 따른 이용자 배분기한
가공 식품	제과류	스낵, 사탕, 껌, 초코렛 등	최소 15일 이전	10일 ~ 1개월 이하의 식품은 대규모 인원에 의해 단기간 소비가 가능한 사회복지시설 · 단체에만 배분
	즉석식품	면류(라면, 소면, 스파게티 등), 햇반, 죽 등		
	냉동식품	아이스크림, 케익, 비닐포장, 스테이크 등		
	통조림	참치, 장조림, 과일통조림 등		
장류 및 식용류	장류	된장, 고추장, 간장, 소금 등	최소 15일 이전	
	기름류	식용류, 참기름 등		
	소스류	육수, 고기양념류 등		
음료류		쥬스, 탄산음료, 멸균우유, 건강음료(홍삼) 등	최소 10일 이전	
신선식품		농산물(두부, 순두부, 콩나물, 호박, 파 등), 육가공식품(핫바, 햄, 소시지, 베이컨 등)	최소 7일 이전	7일 ~ 10일 이하의 식품은 대규모 인원에 의해 소비가 가능한 사회복지시설 · 단체에만 배분
제빵류		각종 슈퍼마켓, 제과점 빵류	최소 3일 이전 (제과점은 판매당일)	접수한 당일 또는 다음날 무료 급식소, 지역아동센터 등 즉시 취식가능시설이나 개인에게로 배분

- 수시 점검을 통하여 유통기한이 적게 남아 이용자에게 배분이 불가능한 기부식품은 즉시 폐기

○ 식품사고 사전예방

- 시 · 군 · 구 담당 부서는 식품위생 담당부서 등과의 협조를 통해 기부식품의 모집 · 관리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위생상태를 분기별 1회 이상 정기점검하고, 필요할 경우 수시점검 이행

※ 기부식품 제공사업에 종사자의 식품위생교육 여부 확인

- 기부식품 사업자는 기부식품 제공시 이용자가 유통기한 내 식품을 취식하도록 안내하고, 이용자의 보관창고(또는 냉장고) 등을 수시점검

○ 식품사고 사후관리

- 식품사고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기부식품 사업자는 관할 보건소 및 시·군·구청에 즉시 보고
- 시·군·구 담당자는 식품사고를 조사하여 사고경위, 피해상황 등을 포함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시·도 담당부서 및 보건복지부(사회서비스자원과)에 우선 보고
- 시·군·구 담당자 및 기부식품 사업자는 조치계획에 따라 식품사고에 대해 조치하고, 이에 따른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시·도 담당부서 및 보건복지부(사회서비스자원과)에 신속히 보고

사. 민 · 형사상의 책임감면(법 제8조)

○ 기부식품의 취식으로 인하여 이용자가 피해를 입은 때에는 제공자(제3조의 규정에 따라 신고한 사업자 제외) 및 기부식품 제공활동에 참여한 자는 민사상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다음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할 경우 민사상 책임을 짐

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⑵ 「식품위생법」 제3조의 위생적 취급 기준을 위반한 경우

※ 본 지침 18쪽 참고

⑶ 「식품위생법」 제4조에 따른 위해식품 등인 경우

참고 : 위해식품 등

1. 썩거나 상하거나 설익어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2. 독 · 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묻어 있는 것 또는 그러할 염려가 있는 것.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3. 병(病)을 일으키는 미생물에 오염되었거나 그러할 염려가 있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4. 불결하거나 다른 물질이 섞이거나 첨가(添加)된 것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5. 제18조에 따른 안전성 평가 대상인 농 · 축 · 수산물 가운데 안전성 평가를 받지 아니하였거나 안전성 평가에서 식용(食用)으로 부적합하다고 인정된 것
6. 수입이 금지된 것 또는 제19조 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것
7. 영업자가 아닌 자가 제조 · 가공 · 소분한 것

○ 기부식품의 취식으로 인하여 이용자가 사상(死傷)에 이른 때에는 제공자·사업자 그 밖에 기부식품 제공활동에 참여한 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형법」제266조 내지 제268조의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음

참고 : 형법상 형의 감경·면제 가능 조항

○ **제266조(과실치상)** ① 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 **제267조(과실치사)**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268조(업무상과실 · 중과실 치사상)**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기부식품제공사업장 인력관리

가. 인력 확보

○ 기부식품 사업자는 기부식품 모집 및 제공을 수행하기 위한 인력(전담인력, 보조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

- 당연신고 사업자의 경우 전담인력 1인, 보조인력 2인 이상

※ 지자체에서 운영비를 보조하는 경우, 가급적 기부식품 사업을 전담(또는 겸직)하여 수행할 수 있는 인력 채용 등의 인건비 지원을 우선적으로 감안할 것을 권고

※ 보조인력의 범위 : 겸직인력, 사회복무요원, 공공근로, 자원봉사자 등

○ 지자체는 운영경비를 최대한 확보하여 지원하고, 사회복무요원·공공근로·사회적 일자리 참여자 등을 우선 배치

-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병무청 수요조사시 적극적으로 인력확보

○ 자원봉사자 확보

- 지역내 자원봉사자를 자체적으로 발굴하여 관리
- 지자체 자원봉사센터, 한국사회복지협의회·적십자·공동모금회 등 기타 민간기관 자원봉사단과의 연계를 통한 자원봉사자 확보

나. 종사자 관리

○ 종사자 인건비

- 광역푸드뱅크, 푸드뱅크 및 푸드마켓 종사자의 최소 인건비 지원기준(붙임9)을 준수

※ 인건비 가이드라인은 최소 지급 권고 기준임

○ 종사자 교육훈련

- 사업자는 기부식품 사업장 종사자가 식품위생교육을 매년 필수적으로 받도록 함

※ 보건복지부 · 지방자치단체 · 전국푸드뱅크 · 광역푸드뱅크 등에서 실시하는 위생교육, 식품안전교육기관(식품위생법상)에서 실시하는 교육 등

- 기부식품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전문성 강화 직무교육, 정보화교육 등 교육훈련 권장

※ 기부식품관리시스템(FMS) 전산교육, 엑셀 및 파워포인트 교육 등

○ 종사자 건강진단

- 기부식품을 가공·조리·저장·운반하는 종사자는 식품위생법 제40조에 따라 업무에 종사하기 전에 미리 건강진단을 받아야 함

※ 식품위생법상 건강진단 대상자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채취 · 제조 · 가공 · 조리 · 저장 · 운반 또는 판매하는 일에 직접 종사하는 영업자 및 종업원. 다만, 완전 포장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운반하거나 판매하는 일에 종사하는 사람은 제외

-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자나 건강진단 결과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자는 종사시키지 못함

※ 종사하지 못하는 질병의 종류 :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A형간염, 결핵(비감염성인 경우 제외), 피부병 또는 그 밖의 화농성(化膿性) 질환, 후천성면역결핍증

5 기부식품 사업자 신고의 철회 · 폐업

가. 철회 · 폐업 신고(법 제3조 제3항)

○ 신고한 사업자가 신고를 철회하거나 폐업하고자 하는 때에는 신고를 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철회 또는 폐업을 신고

나. 절차

○ 철회·폐업 신고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 [붙임 10] : 철회(폐업) 신고서(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

○ 구비서류(전자문서 포함)

(1) 철회 또는 폐업 의결서(법인인 경우)

(2) 기부식품 사용 또는 처분계획서

(3) 신고필증

다. 추가 조치사항

○ 사용 또는 처분계획서의 타당성과 기부식품 사용 및 처분(이관) 여부 확인

○ 지자체로부터 지원받아 운영 중인 푸드뱅크(마켓)가 사업을 철회 또는 폐업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자체 보조금으로 구입한 냉동탑차, 냉장고, 컴퓨터 등 운영장비는 관할 시·군·구에서 회수한 후, 관할 지역의 신고한 사업자에게 인계하여 동 사업에 활용하도록 조치

○ 철회 또는 폐업 신고를 수리한 시장·군수·구청장은 철회 또는 폐업 사실(사업장 명칭, 대표 성명, 소재지 등)을 관할 시·도 및 보건복지부에 신속히 보고하고, 해당 지역 광역푸드뱅크에서는 동 사실을 전국푸드뱅크에 보고

6 운영지원 및 지도 · 감독

가. 국가 등의 지원(법 제7조)

○ 보건복지부는 기부식품 제공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 민간위탁을 통해 전국푸드뱅크, 중앙물류센터를 운영하고, 기부식품 관리시스템(FMS) 운영

○ 지자체는 기부식품제공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내 사업을 추진하고, 활성화를 위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

- 분권교부세 및 지방비 등을 확보하여 인건비, 운영장비, 공공요금・차량 유지비 등 경비 지원

※ 인건비, 장비, 경비 지원은 신고사업자에게만 지원하고, 사업실적 등 평가를 통하여 지원여부를 결정

나. 식품 안전을 위한 지도 · 감독(법 제10조)

○ 보건복지부 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시자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아래와 같은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공자 및 사업자의 사무소 및 시설에 출입하여 검사 또는 질문하도록 하는 등 지도·감독을 할 수 있음

⑴ 제공자 또는 사업자가 제5조 제2항(기부식품 안전 취급)을 위반

⑵ 식품사고 등 식품으로 인한 중대한 위생상의 위해가 우려

※ 공무원이 사무소 또는 시설에 출입하여 검사 또는 질문하는 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

다. 기부식품제공사업 투명성 확보 및 식품 안전관리

○ 지자체는 신고한 사업자가 기부식품 모집과 제공에 관한 장부 비치, 영수증이나 증빙서류를 작성·보관 여부, 결과 공개, 식품 유통기한 관리의 의무를 준수하고 있는지 등 분기별 1회 이상 정기점검하고, 필요할 경우 수시점검 이행

○ 기부식품 모집·제공, 사업장 운영현황 등의 정보를 『기부식품관리시스템(FMS)』을 통해 관리하도록 지도・감독

라. 기부식품제공사업 공정성 제고

○ 기부식품 배분, 이용자 선정 등 사업이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분기별 1회 이상 정기점검하고, 필요할 경우 수시점검 이행

- 기부식품이 실제로 필요한 대상에게 배분되는지, 배분기준에 맞게 이용자가 선정되는지, 이용자에게 중복적으로 식품이 배분되지는 않는지, 배분금지 대상에게 기부식품이 배분되는지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실태점검 실시

마. 기부식품 제공자 및 사업자 상시 관리

○ 기부식품 사업자의 신고유형에 따른 인력기준, 시설·설비 기준 등을 준수하고 있는지 분기별 1회 이상 정기점검하고, 필요할 경우 수시점검 이행

※ 임의신고, 미신고 사업장의 경우 기부식품 장부가액 3억원 이상일 경우 당연신고 및 당연신고로의 전환 필요

○ 기부식품 제공자(미신고 사업장)의 경우에도 기부식품 모집 및 제공의 투명성, 기부식품의 안전취급 등 법적 의무가 부여되어 있으므로 기부식품 제공자에 대한 실태점검 및 지도·점검을 실시

7 시정명령, 사업장 폐쇄 등 행정처분

가. 시정명령(법 제11조 제1항)

○ 요건

⑴ 제3조 제1항(임의신고) 또는 제2항(당연신고)의 규정에 따라 신고한 사업자가 신고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⑵ 제공자 및 사업자가 제5조 제1항(모집 및 제공과정의 투명성) 또는 제2항(기부식품 안전 취급)의 규정을 위반한 때

○ 행정처분의 주체 :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 절차 : 위반사실과 시정기간을 적은 서면 통지를 통하여 시정명령

나. 사업 정지명령 및 사업장 폐쇄명령(법 제11조 제2항)

○ 요건

⑴ 시정명령을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

⑵ 제6조 제1항(기부식품 무상제공)의 규정을 위반한 때

○ 행정처분의 주체 : 시장・군수・구청장

※ 사업장 폐쇄시에는 미리 청문을 실시하여야 함

다. 사업장 폐쇄(법 제11조 제4항)

○ 요건 : 사업자가 폐쇄명령을 받은 후에도 계속하여 사업을 하는 때

○ 행정처분의 주체 : 시장·군수·구청장

○ 폐쇄조치의 종류

⑴ 사업장의 간판 그 밖의 사업장 표시물의 제거·삭제

⑵ 사업장이 적법한 사업장이 아님을 알리는 게시문 등의 부착

⑶ 사업장의 시설물 그 밖에 사업에 사용하는 용구 등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봉인

※ 급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외에는 미리 당해 사업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주어야 함

※ 사업을 할 수 없도록 하는데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하며, 관계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제시

○ 봉인 또는 게시문 해제 요건

⑴ 봉인 또는 게시문 부착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

⑵ 당해 사업자 또는 그 대리인이 당해 사업장을 폐쇄할 것을 약속

⑶ 그 밖에 정당한 사유를 들어 봉인 또는 게시문 해제를 요청하는 때

라. 벌칙 및 양벌규정(법 제12조, 13조)

○ 제6조 제1항(기부식품 무상제공)을 위반하여 기부식품을 제공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2조의 위반행위(제6조 제1항 위반)를 하면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함

-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 제외

마. 과태료(법 제14조, 시행령 제8조)

○ 요건

⑴ 제3조 제2항(당연신고)의 규정을 위반한 자

⑵ 제5조 제1항(모집 및 제공과정의 투명성) 또는 제2항(기부식품 안전 취급)의 규정을 위반한 자

⑶ 정당한 사유 없이 제10조 제1항(지도·감독)의 규정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자 또는 검사·질문을 거부·기피·방해한 자

○ 행정처분의 주체 :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 행정처분, 의견청취 등의 절차

⑴ 서면통지 : 해당 위반행위 조사·확인 후 위반사실과 과태료금액 등을 서면으로 밝혀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통지

※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신청 방법과 기간 등을 함께 기재

⑵ 의견제출 :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말로나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을 때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봄

⑶ 이의제기 :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

→ 이의제기시 부과권자는 지체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고,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실시

○ 징수절차

- 과태료 징수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
- 과태료 체납시(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

○ 세부기준 :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 (시행령 별표3)

위 반 사 항	근거법령	과태료
1. 법 제3조제2항을 위반하여 사업자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법 제14조제1항 제1호	300만원
2. 법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기부식품의 모집 및 제공 과정을 투명하게 하지 아니한 자 가. 제5조제1항에 따른 장부를 사업장에 비치하지 아니하거나 영수증 등을 보관·작성하지 아니한 자 나. 제5조제2항에 따른 기부식품 모집 및 제공결과를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개하지 아니한 자	법 제14조제1항 제2호	 200만원 150만원
3.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기부식품을 안전하게 취급하지 아니한 자	법 제14조제1항 제2호	300만원
4.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를 한 자,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또는 검사·질문을 거부·기피·방해한 자	법 제14조제1항 제3호	300만원

Ⅲ. 기 타

Ⅲ 기 타

1 붙임자료

〈붙임 1〉 사업자 신고서
〈붙임 2〉 기부식품제공사업 계획서(예시)
〈붙임 3〉 사업자 신고증
〈붙임 4〉 기부식품제공사업 이용신청서
〈붙임 5〉 기부식품 영수증(예시)
〈붙임 6〉 기부금 영수증
〈붙임 7〉 기부식품 모집 및 제공 명세서
〈붙임 8〉 기부식품 위생관리 요령
〈붙임 9〉 2013년 사회복지생활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붙임 10〉 철회(폐업) 신고서

붙임 1 사업자 신고서

[별지 제1호서식] (앞 쪽)

<table>
<tr><td colspan="5">사업자 신고서</td><td>처리기간
7일</td></tr>
<tr><td rowspan="6">신
고
인</td><td>성명(대표자)</td><td colspan="2"></td><td>주민등록번호</td><td></td></tr>
<tr><td>법인명(법인에 한함)</td><td colspan="3"></td></tr>
<tr><td>주 소</td><td colspan="4">(전화:)</td></tr>
<tr><td>명 칭</td><td colspan="2"></td><td>신고의 종류</td><td>당연( ),임의( )</td></tr>
<tr><td>소 재 지</td><td colspan="2"></td><td></td><td></td></tr>
<tr><td>사업장 면적</td><td colspan="4"></td></tr>
<tr><td colspan="6">「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와 동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 · 군수 · 구청장 귀하</td></tr>
<tr><td rowspan="2">구
비
서
류</td><td colspan="2">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td><td>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부동의하는 경우
해당 서류 제출)</td><td>수수료</td></tr>
<tr><td colspan="2">1. 정관 1부(법인인 경우에 한합니다)
2. 사업계획서(이용자로부터 대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
3. 사업장을 설치할 토지와 건물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td><td>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합니다)</td><td>없음</td></tr>
<tr><td colspan="6">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 1 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td></tr>
</table>

(뒤 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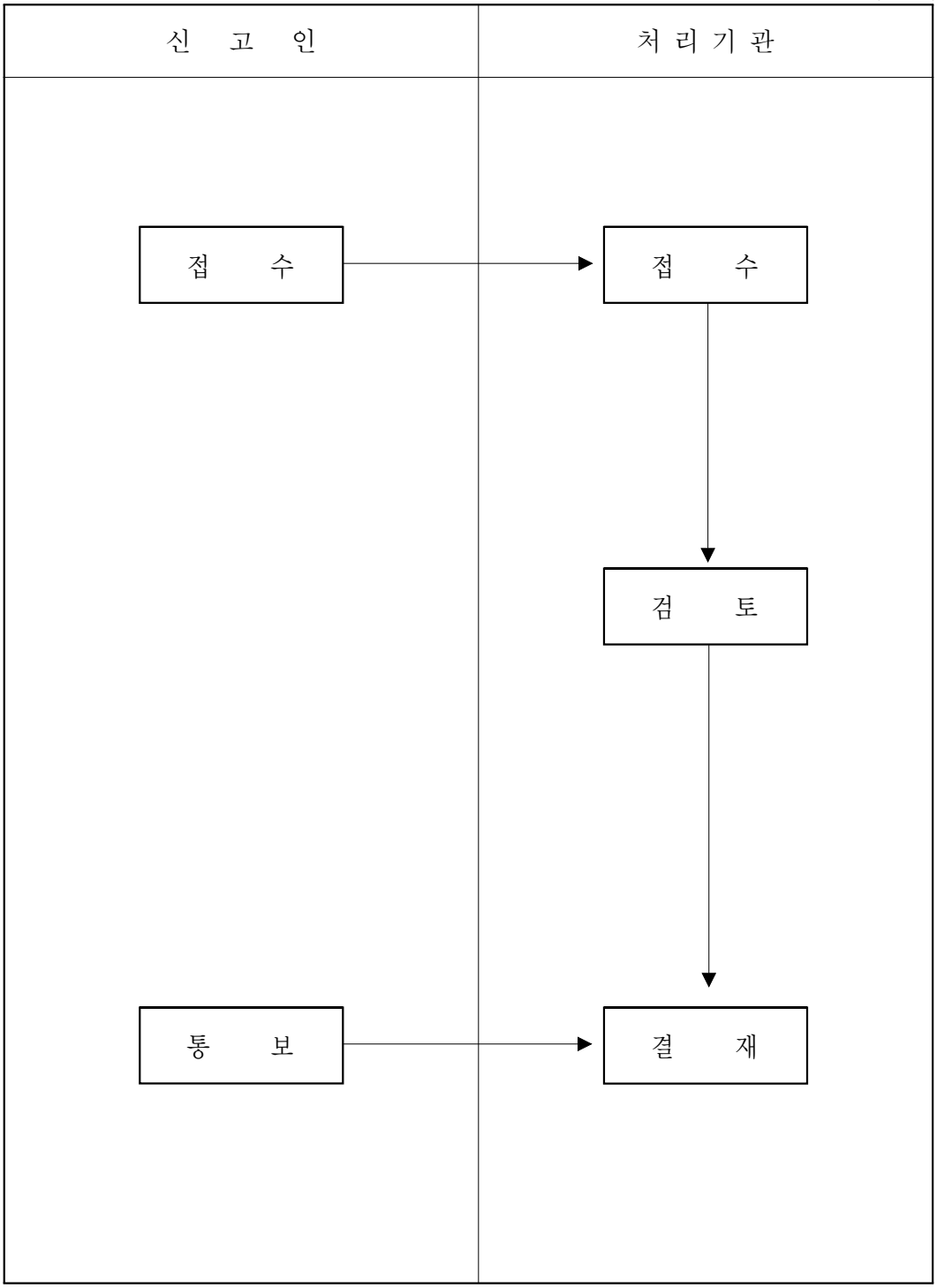

붙임 2 기부식품제공 사업계획서 예시

사업계획서

1. 기관소개

2. 사업의 필요성

3. 설치·운영 사업계획(개조식으로 기술)

○ 사업지역 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긴급지원대상자 현황(최근 3년)

○ 기존 푸드뱅크(푸드마켓) 운영성과(최근 3년)

- 기부실적

구 분	계		기업(식품제조 및 유통, 후원기업)		공공기관 및 기타 각종 법인·단체		개인 기부자	
합계	개소	천원	개소	천원	개소	천원	명	천원
연도								

- 지원실적

구분	합계		재가결식자		사회복지 이용시설 (무료급식소포함)		무료급식소		사회복지단체 및 생활시설		전국·광역 등 푸드뱅크 이관처리 실적	
	제공 금액	이용 인원	제공 금액	이용 인원	제공 금액	이용 인원	제공 금액	이용 인원	제공 금액	이용 인원	제공 금액	이용 인원
합계	천원	명	천원	명	천원	명	천원	명	천원	명	천원	명
연도												

○ 식품·생활필수품 기부업체 및 이용자 발굴 관리계획

○ 사업운영 활성화를 위한 홍보계획 및 상담계획

○ 사업장 설치 위치(이용자 접근가능성) 및 규모

○ 사업지역 내 사회복지시설·단체와의 사업연계 및 구축 계획

○ 사업운영 인력에 따른 업무분장 계획(담당인력 등 자원봉사자)

○ 후원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

○ 기대효과

4. 사업예산 계획

5. 기타 사업지역 내 기부식품제공사업에 필요한 사항

붙임 3 사업자 신고증

[별지 제2호서식] (앞 쪽)

제 호

사 업 자 신 고 증

성명(대표자) : 생년월일(남/녀) :

주 소 :

사업자명칭 :

소 재 지 :

사업장면적 :

신고의 종류:

조 건: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와 동법 시행규칙 제2조 제3항에 따라 사업자 신고를 수리합니다.

년 월 일

시장 · 군수 · 구청장 (인)

(뒤 쪽)

변 경 내 용		
일 자	내 용	담당자 직·성명 (서명 또는 인)

붙임 4 기부식품제공사업 이용신청서

<table>
<tr><th colspan="6">기부식품제공사업 이용신청서</th></tr>
<tr><td>성 명</td><td colspan="2"></td><td>주민등록번호</td><td colspan="2">-</td></tr>
<tr><td>성 별</td><td></td><td>연령</td><td></td><td>시·군·구명</td><td></td></tr>
<tr><td>주 소</td><td colspan="5"></td></tr>
<tr><td>전 화</td><td colspan="2"></td><td>휴대폰</td><td colspan="2"></td></tr>
<tr><td>팩 스</td><td colspan="2"></td><td>이메일</td><td colspan="2"></td></tr>
<tr><td>이용자
구 분</td><td colspan="2">□ 긴급지원대상자
□ 차상위계층
□ 기초생활보장수급 탈락자
□ 기타 기부식품이 필요한 자와 인근지역 이용대상자
□ 기타(　　)</td><td>이용자
특성</td><td colspan="2">□ 결식아동
□ 소년·소녀가정
□ 재가어르신
□ 재가장애인
□ 한부모가정
□ 저소득 독신가정
□ 다문화가정</td></tr>
<tr><td>가족관계</td><td colspan="5">동거가족(　　)명, 관계(　　)</td></tr>
<tr><td>주거형태</td><td colspan="5">□자택 □전세 □월세 □영구임대 □기타(　　)</td></tr>
<tr><td>가계소득</td><td colspan="5">월소득(　　) 소득내역(　　)</td></tr>
<tr><td>가정형편</td><td colspan="5"></td></tr>
<tr><td>관련 증빙자료</td><td colspan="5">※ 이용신청서 작성시 관련 증빙서류(의료급여증 또는 긴급지원에 관한 정황증빙 등) 첨부</td></tr>
<tr><td colspan="6">본인은 기부식품 제공사업자(푸드뱅크, 푸드마켓)로 부터 제공받은 기부식품 또는 물품을 판매하지 않으며, 제공받은 기부식품을 유통기한내 소비할 것을 서약함. 이와 같은 사항을 위반한 경우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을 인정함.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td></tr>
<tr><td colspan="6">본인은 식품기부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4조(기부식품제공사업), 제5조(기부식품 보집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사 및 업무처리를 위하여 기부식품 제공사업자가 다음의 정보를 수집하여 활용하는데 동의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당해 업무처리를 위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다 음
■ 제공할 개인정보의 내용 : 개인실별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대상자 적격 판정 자료(신청서에 기재된 자격정보, 가구정보, 재산정보 등), 수혜 이력 등
■ 수집정보 활용 : 사업운영을 위한 이용자 관리, 수혜 자격 관리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td></tr>
<tr><td colspan="6">기부식품 제공사업장(○○푸드뱅크/마켓) 귀하</td></tr>
</table>

No. 2012-0001

기부식품 영수증

기부식품은 어려운 이웃을 위하여 공정, 투명하게 제공되어 활용됩니다.

기 부 금 품 :	일금	원정	(₩)
기 부 내 역 :			(수량: 개)
기 부 일 자 :	2012. 00. 00		(건수:)
기 부 자 :			
사업자등록번호 :	000-00-00000		
주 소 :	00시 00구 00동 00빌딩 00층		

2012년 월 일

* 음식료품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 또는 개인이 무상으로 푸드뱅크에 기증할 경우 기부식품(장부가액) 전액을법인세법시행령 제 19 조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 55 조에의해 손비 또는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식품 수령자 :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전국푸드뱅크 0 0 0 (인)

* 전국푸드뱅크 사업자등록번호 : 000-00-00000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전국푸드뱅크

서울 마포구 공덕동 456번지 한국사회복지회관 5층
전화 : 2077-3985-6 팩스 : 02-713-7297

한국사회복지협의회장
전국푸드뱅크

붙임 6 기부금 영수증

일련번호	

기 부 금 영 수 증

※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❶ 기부자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소재지)			

❷ 기부금 단체

단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고유번호)	
소 재 지			

❸ 기부금 모집처(언론기관 등)

단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소 재 지		기부금공제대상 기부금단체 근거법령	

❹ 기부내용

유 형	코 드	구 분	연월일	내 용			금 액
				품명	수량	단가	

「소득세법」 제34조,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제88조의4 및 「법인세법」 제24조에 따른 기부금을 위와 같이 기부하였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위와 같이 기부금을 기부받았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기부금 수령인 (서명 또는 인)

작 성 방 법

1. ❷ 기부금 단체는 해당 단체를 기부금공제대상 기부금단체로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 등 관련 법령을 기재하여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하여야 합니다.(예,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5호,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
2. ❸기부금 모집처(언론기관 등)는 방송사, 신문사, 통신회사 등 기부금을 대신 접수하여 기부금 단체에 전달하는 기관을 말하며, 지부금단체에 직접 기부한 경우에는 적지 않습니다.
3. ❹기부내용의 유형 및 코드는 다음 구분에 따라 적습니다.

기부금 구분	유형	코드
「소득세법」 제34조제2항,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기부금	법정	10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에 따른 기부금	정치자금	20
「소득세법」 제34조제1항(종교단체 기부금 제외),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기부금	지정	40
「소득세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기부금 중 종교단체기부금	종교단체	41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에 따른 기부금	우리사주	42
필요경비(손금) 및 소득공제금액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기부금	공제제외	50

4. ❹기부내용의 구분란에는 “금전기부”의 경우에는 “금전”, “현물기부”의 경우에는 “현물”로 적고, 내용란은 현물기부의 경우에만 적습니다.

210㎜×297㎜[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붙임 7 기부식품 모집 및 제공 명세서

[별지 제4호서식]

기부식품 모집 및 제공명세서

연월일	모 집					제 공				
	기부자	품명	수량	가액	비고	이용자	품 명	수 량	가 액	비고

※ 작성요령

○ 기부받은(제공한) 순서대로 계속 기록하여야 합니다.

붙임 8 기부식품 위생관리 요령

기부식품 위생관리 요령

Ⅰ. 목 적

○ 기부식품제공사업자 등을 통해 전달되는 기부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여 식품사고를 사전 예방하고, 식품기부자 및 이용자가 안심하고 기부식품을 이용하도록 기부식품의 위생관리 요령을 마련하고자 함

Ⅱ. 기본방침

가. 모든 기부식품 대상 관능검사 실시

○ 유통기한 등에 관계없이 모든 식품에 대하여 관능검사를 실시하고, 수량이 많은 경우 표본을 추출하여 내용물을 확인·검사한 후 이용자에게 제공

나. 조리식품은 이용자 제공 전 또는 섭취 전 반드시 재가열

○ 조리식품은 가열하여 활용하되 특히 여름철과 위해도가 높은 식품은 세심한 주의 요망

다. 기부식품의 안전성이 의심될 경우 즉시 폐기

○ 유통기한 등 표시사항 확인 및 관능검사결과 식품의 안전성에 조금이라도 의심될 경우, 즉시 폐기처리

라. 기부식품의 위생관리 책임자 지정 등 전문가 도움 요청

○ 제공자 및 사업자는 기부식품에 대하여 위생관리책임이 있으며, 동 임무를 직접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담당책임자를 지정하고, 식품위생관리에 대한 교육을 받음

○ 제공자 및 사업자 또는 담당책임자가 기탁식품의 안전성을 확신할 수 없을 경우 주변 전문가의 도움을 받도록 함

마. 폐기대상 식품이 기부된 경우도 기부자에 대한 예의 준수

○ 폐기대상 식품의 기부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아닌 경우, 선의의 기부자가 지속적으로 식품기부에 참여하도록 예우 갖춤

Ⅲ. 기부식품 관리 3대 원칙

가. 청결의 원칙

1) 기부식품이 아무리 안전한 경우라도, 전달과정 및 보관 등 취급시에 청결을 등한시하게 되면 기부식품을 안전하게 관리·제공할 수 없음

2) 식품위생에 있어 가장 중요한 「위생·청결」은

○ 단순히 식품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청결한 설비, 식품 취급자의 청결 등을 의미하며 특히, 식품취급자인 제공자 및 사업자 등 관계 종사자 등의 청결상태 유지가 매우 중요함

3) 기부식품을 관리하여서는 안 되는 사람

○ 설사·발열 등의 증상이 있거나 식중독의 원인이 되는 질환(화농증 등) 또는 음식물을 통하여 전염될 우려가 있는 질환에 감염된 자

○ 종사자 또는 그 동거인이 법정전염병환자이거나 그 의심이 있는 자인 경우와 보균자임이 판명된 경우(단, 종사자 본인이 보균자가 아님이 판명된 경우는 제외)

○ 해외여행에서 귀국한 종사자 또는 해외여행에서 귀국한 자와 동거하거나 동일 직장에서 작업하는 종사자로서, 위장장애 등의 증상이 있는 경우(단, 종사자 본인이 보균자가 아님이 판명된 경우는 제외)

나. 신속의 원칙

1) 어떤 세균도 존재하지 않는 무균상태로 만들기는 불가능하므로 식품에 부착된 세균이 증식하지 못하도록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함

○ 가능한 한 빠른 시간내에 기부된 식품은 배급·취식하여야 하며, 일정기간의 보관이 필요한 식품은 해당 보관조건에 따라 냉장·냉동 등의 방법으로 보관하여야 함

2) 여름철에 식중독을 일으키기 쉬운 식품에 대한 유통기한 준수

○ 도시락류는 7시간 경과후부터 식중독 발생위험이 빠르게 높아지므로, 일반 도시락·햄버거류의 경우 여름철(6~9월)에 10시간, 그 밖의 계절에는 12시간이 경과하면 위험함(김밥의 유통기한은 7시간)

다. 냉각 또는 가열의 원칙

1) 식중독균은 그 종류에 따라 증식의 최적온도가 서로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사람의 체온(36~37℃) 범위에서 잘 자람.

2) 5℃에서부터 60℃까지 광범위한 온도 범위 내에서 증식이 가능하므로 식품 보관 시 이 범위를 벗어난 온도에서 보관하도록 하여야 함.

〈온도가 식중독균의 생장에 미치는 영향〉

−10℃	0℃ 5℃	10℃ 37℃	60℃	65℃
거의 발육하지 않음	발육하는 세균도 있음	모든 세균이 활발히 증식	어떤 종류의 세균은 사멸하지 않음	대부분 세균이 사멸함

Ⅳ. 일반적인 식품의 안전성 검사

가. 서류검사

1) 유통기한과 같이 문서나 표시 등 활자로 된 정보를 활용

2) 기부업체에서 발급한 기부대장에 기초하여 식용으로서의 적합여부 판단

나. 관능검사

1) 직접 사람의 오감을 활용하여 검사하는 것으로서 기부된 모든 식품은 동 검사를 실시하여야 함.

2) 특히 쉽게 상할 우려가 있거나 유통기한이 임박한 식품의 경우에는 내용물을 확인하거나 표본을 직접 시식하여 안전성 검사

3) 관능검사 기준

① 생식품류의 관능검사 기준

식품의 종류	식별요령		
	양호	보통	불량
가금육 (닭고기류)	탄력이 있고 살이 단단함.	-	이상한 냄새가 나고 끈적거리거나 어두운 색을 띰.
식 육	쇠고기는 선홍색을 띠고 탄력이 있음. 돼지고기는 지방의 색이 희고 탄력이 있으며, 살코기는 엷은 분홍색을 띰.	-	검은색, 초록색, 보라색 등의 얼룩이나 반점이 있음. 이상한 냄새가 나고 탄력이 없음.
어류 (냉동생선은 해동 후)	살이 단단하고 비린내가 나지 않음	냄새가 비릿해짐.	물에 뜸.
	비늘이 피부에 잘 붙어 있으며, 어종 특유의 색깔과 싱싱한 광택을 띰.	탄력성이 조금 떨어짐.	몸체는 탄력이 없고 흐물흐물함.
	눈은 돌출하였고, 혈액의 침출이나 혼탁이 없음.	눈은 돌출하지 않고 약간 혼탁함.	눈은 들어가고 현저하게 혼탁하거나 떨어져나가고 있음.
어류 (냉동생선은 해동 후)	아가미는 선홍색임	아가미는 선명하지 못하고 소량의 점착물이 있음	아가미는 암록색이고, 불쾌한 냄새가 남
	배부분을 누르면 탱탱함	복부가 약간 무르기 시작함	복부는 주저앉고, 물렀음
	살색이 투명하고, 살을 뼈에서 발라내기 어려움	살은 약간 불투명하고 혈관도 약간 불투명함	살은 뿌옇고 혼탁함
계 란	껍질표면이 까실까실하고, 광택이 없음	-	깨보면 난백이 퍼짐
	흔들었을 때 소리가 나지 않음	-	흔들었을 때 소리가 남
	전등빛에 비추면 밝고 투명함	-	전등빛에 비추면 어둡게 보임
채소류	광택이 있고, 싱싱함	벌레가 먹거나 상처가 있어도 그 부분을 잘라내면 싱싱함.	잎이 시들고 탄력이 없음
콩나물, 숙주류	조직이 단단함.	-	수분이 너무 많고, 내용물을 눌러 보았을 때 조직이 쉽게 문들어짐.

② 건식품류의 관능검사 기준

○ 건고추류는 기본적으로 기부 받지 않는 것이 좋음.

- 가을에 수확하여 해를 넘길 경우 고추 안쪽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푸른 곰팡이가 피어있는데 사실상 육안으로 검사하기가 어려운 실정으로 이런 제품은 암발생의 원인이 됨
- 건고추류의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다른 제품에 비해 그해 생산된 안전한 제품은 기부받기가 어려움.

○ 말린 제품류(건어물류, 육포, 건과일류 등)

- 원래의 색감보다 진해져 탁한 색감을 띠거나, 조직이 물러졌거나, 냄새가 심할 경우 부패되고 있는 상태임.

③ 가공식품의 관능검사 기준

○ 가공식품의 품질변화는 유통기간(제조일부터 유통기한까지)의 경과 유무 및 장단에 따라 간접적으로 판단할 수 있음.

- 1, 2주 정도로 유통기간이 짧은 제품의 경우에는 부패의 속도가 빨라 며칠 사이에 해당 제품을 먹을 수 없게 됨.
- 유통기간이 2, 3년씩 되는 제품의 경우(주로 캔류임)에는 수주일 또는 수개월 내에 안전성에 큰 변화가 생기지 않음

다. 정밀검사 : 이 · 화학적 검사

○ 관능검사를 통해서는 식용가능 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나 기부량이 많은 경우 정밀검사를 통해 적합판정 후 활용

○ 정밀검사는 검체를 채취하여 시·도보건환경연구원 등 검사기관에 의뢰

참고

● 식중독 발생 위험이 높은 식품	
- 유제품류	우유, 요구르트, 버터, 치즈, 우유가 들어간 음료류 등
- 생선가공품류	각종 생선 캔류, 어묵류, 게맛살류 등
- 육가공품류	햄, 소시지, 족발 등
● 상대적으로 위해가 적은 식품	
- 탄수화물류	떡류, 빵류, 과자류, 사탕류 등
- 건조식품류	마른멸치, 미역, 오징어 등
- 장 류	고추장, 된장, 간장류
● 특히 주의하여야 할 식품	
- 조리식품 중 샐러드류, 달걀구이, 자른 햄과 소시지, 생선회 등은 특히 주의하여야 하며, 여름철에는 이런 식품류는 배분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함 - 그러나 비교적 안전한 식품류의 경우도 주의를 소홀히 하거나 다량 섭취 시 위해가 발생할 수 있음	

Ⅴ. 기부식품 보관 및 운송요령

가. 식품의 보관기준

○ 미생물의 생육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적정온도에서 보관하여야 함.

○ 가공식품의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보관방법(실온, 냉장, 냉동 등)이 포장지에 표시되어 있음.

식 품 의 종 류	보 존 온 도
· 곡류가공품(밀가루·전분)	실온
· 설탕	실온
· 포장육(진공포장육 제외)	-2 ~ 0℃
· 햄류 및 소시지, 분쇄가공품(가열제품)	0 ~ 10℃(비가열소시지0 ~ 5℃)
· 베이컨	10℃ 이하
· 멸균·건조식육제품, 유처리 육제품	실온
· 기타식육제품	
- 냉장제품	-2 ~ 10℃
- 냉동제품	-18℃ 이하
· 어육제품	
- 냉장제품	0 ~ 10℃
- 냉동제품	-15℃ 이하
- 멸균·건조어육제품	실온
· 유지류(식용유 등)	실온
· 날계란	10℃ 이하
· 알가공품 (건조식품 제외)	5℃ 이하
· 우유, 농축유, 탈지유, 유크림류	0 ~ 10℃
· 연유	실온
· 버터류·치즈류	
-냉장제품	0 ~ 10℃
-냉동제품	-18℃ 이하
· 신선 과실·채소류	10℃ 이하
· 신선 어패류	5℃ 이하

식품의 종류	식 별 요 령
진공 포장된 제품 (햄, 소시지, 국수류 등)	포장지와 내용물이 한꺼번에 압축되어 있어야 하는 제품이 포장과 내용물이 분리되어 있을 경우는 포장상태가 불량하거나, 이미 이물질이 발생하여 포장상태가 변화한 것으로 유통기한 이전 제품이라도 부패 하였을 가능성이 큼.
콩제품 (두부류)	표면에 점액이 있고 겉면이 분홍빛을 띰. 특히, 부패도가 높을수록 악취가 심함.
포장된 국수류 (냉면, 쫄면, 가는 국수류 등)	내용물에 곰팡이가 피거나 내용물간에 흰 실 같은 이물질이 있으면 상한 상태임.
음료수류	펫트병에 들어있는 경우 흔들어 햇볕에 비추어보았을 때 이물질이 들어있지 않아야 함. 단, 제조상 자체 엑기스(내용물)이 들어있는 종류는 다름. (오렌지 쥬스, 파인애플, 토마토 쥬스 등 주로 펫트병 제품보다 고가격 제품들임)
캔 류	부풀어 있거나 심하게 찌그러져 있는 경우에는 유의하여야 함. – 찌그러진 부분으로 공기 등 이물질 유입 가능 – 특히, 육류제품의 경우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니움이라는 치명적인 물질이 존재할 우려가 높음.
우유, 요구르트 등	상하면 시큼한 냄새가 남.
수산가공품류 (어묵류, 게맛살류 등)	내용물이 서로 엉겨서 덩어리져 있는 것은 상하기 시작하는 초기 단계를 의미하므로 반드시 조리해서 먹어야 함.
쵸콜렛	본래의 갈색에서 색이 흐려져 있고, 색이 고르지 않으며 부분부분 흰빛깔의 다른 느낌을 주며, 대체로 원래보다 심하게 건조되어 있음.
어묵류	포장지와 내용물간에 가는 실같은 이물질이 발생되어 있고, 미끈미끈한 점액이 생겨있음.
유탕처리제품 (도우넛, 튀김만두, 튀긴 과자류등)	기름에 튀긴 가공품류의 색이 너무 진한 갈색을 띠는 것은 산화부패된 기름에 튀긴 것으로 식중독 및 노화의 원인이 됨
냉동가공품 (돈까스, 만두류등)	내용물이 서로 엉겨있는 것은 해동과 냉동을 반복한 것으로 제품의 안전성이 저하된 것임
탄수화물가공제품 (빵류, 떡류 등)	제품의 한부분에 곰팡이가 핀 경우에 전량 폐기토록 함. 이미 제품 전체에 곰팡이 포자가 퍼져있는 상태이므로 곰팡이만 떼어내고 먹는 것은 위험함.

나. 기부식품의 운송·보관요령

1) 일반원칙

○ 냉동·냉장 유통 또는 보관이 필요한 식품의 경우에는 적정설비를 갖춘 운반차량 혹은 용기를 이용하여 운송 또는 보관하도록 함.

○ 운반과정 중 용기가 파손되거나 먼지 또는 이물이 혼입되지 않도록 주의

○ 재가열이 필요한 경우 1시간 이내에 식품의 중심부 온도가 적어도 75℃ 이상에 이르도록 가열하여야 함.

○ 재가열된 식품은 더운 상태(60℃이상)에서 신속하게 제공되어야 하고 소비되지 않은 식품은 폐기처분하여야 함.

○ 검수가 끝난 식품은 바닥에서 20㎝이상의 높이에 두어야 하는데 이는 보관창고의 바닥에서 습기가 올라와 기탁식품을 상하게 하기 때문임.

2) 냉장·냉동고의 관리

○ 냉동고 안의 온도는 -18℃이하, 냉장고 안의 온도는 10℃이하 (채소류를 보관하는 장소는 10℃전후)를 항상 유지하여야 하나

- 문의 개폐를 고려하여 냉동고는 -20℃이하, 냉장고는 5℃이하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함.

○ 온도는 매일 오전과 오후에 한번씩 정기적으로 측정하여야 하며,

- 자동기록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측정결과를 기록·보존하는 것이 바람직함.

○ 냉장·냉동고는 용량의 70%이하로 보관하고, 문의 개폐는 신속하고 최소한으로 하여야 함.

○ 냉장·냉동고는 주 1회 이상 청소를 실시하여야 하며,

- 식품으로부터 유출된 침출액 등에 의해 더러워진 경우에는 그때마다 청소를 하여야 함.

○ 시설의 청소는 모든 식품을 작업장내에서 완전히 반출하거나 청소에 따른 오염을 방지할 수 있도록 조치한 후 실시하여야 함.

○ 리스테리아 등 병원성 미생물 성장을 억제하기 위하여 바닥 및 기구류 등은 가능한 건조상태로 유지하여야 함.

3) 냉동·냉장차의 관리

○ 관리는 냉장고의 원칙에 준하여 실시함

○ 청소는 배송 후 냉동·냉장 작동장치를 끈 후에 내부청소를 바로 하고, 내부 환기를 시켜 차 내부가 건조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함.

○ 배송 시 식품 침출액이 배출되었을 경우 소독 청소를 하도록 함.

Ⅵ. 행정사항

가. 식품사고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사업자 등은 관할 보건소 및 시·군·구청 담당공무원에게 즉시 보고하여 조치하고, 시·군·구청장은 시·도지사를 경유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

나. 전국 및 광역푸드뱅크는 기부식품의 위생적인 모집·관리 및 제공을 위해 관능검사기법 등을 수집·연구 및 보급 강구

붙임 9 2013년 사회복지생활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2013년 사회복지생활시설 종사자 기본급 권고 기준

(단위 : 천원/월)

직위 (호봉)	원장	사무 국장	과장 및 생활 복지사	생활지도원		기능직	관리인	촉탁 의사
				선임	직원			
1호봉	2,070	1,822	1,665	1,607	1,554	1,364	1,463	2,398
2호봉	2,160	1,908	1,723	1,669	1,602	1,415	1,512	
3호봉	2,253	1,998	1,804	1,716	1,652	1,465	1,561	
4호봉	2,349	2,090	1,889	1,744	1,704	1,515	1,610	
5호봉	2,450	2,186	1,978	1,829	1,755	1,567	1,660	
6호봉	2,553	2,285	2,070	1,916	1,860	1,664	1,756	
7호봉	2,659	2,386	2,164	2,005	1,907	1,716	1,810	
8호봉	2,767	2,488	2,260	2,092	1,969	1,768	1,860	
9호봉	2,876	2,592	2,352	2,176	1,985	1,803	1,893	
10호봉	2,984	2,692	2,442	2,258	2,061	1,875	1,964	
11호봉	3,088	2,789	2,529	2,338	2,134	1,940	2,027	
12호봉	3,171	2,867	2,599	2,403	2,194	1,985	2,072	
13호봉	3,249	2,940	2,666	2,465	2,251	2,029	2,114	
14호봉	3,323	3,009	2,729	2,524	2,307	2,074	2,158	
15호봉	3,393	3,076	2,790	2,580	2,360	2,119	2,198	
16호봉	3,459	3,138	2,847	2,635	2,411	2,173	2,253	
17호봉	3,521	3,198	2,903	2,686	2,462	2,220	2,297	
18호봉	3,580	3,254	2,955	2,736	2,509	2,264	2,338	
19호봉	3,636	3,307	3,005	2,784	2,555	2,308	2,383	
20호봉	3,688	3,357	3,052	2,829	2,598	2,353	2,425	
21호봉	3,738	3,406	3,097	2,873	2,640	2,420	2,489	
22호봉	3,784	3,451	3,140	2,914	2,680	2,462	2,533	
23호봉	3,829	3,494	3,181	2,954	2,718	2,507	2,574	
24호봉	3,870	3,534	3,220	2,992	2,754	2,552	2,616	
25호봉	3,909	3,573	3,257	3,028	2,789	2,596	2,661	
26호봉	3,946	3,610	3,292	3,064	2,820	2,641	2,703	
27호봉	3,979	3,644	3,323	3,093	2,847	2,686	2,745	
28호봉	4,009	3,673	3,351	3,121	2,873	2,700	2,758	
29호봉	4,036	3,701	3,378	3,148	2,898	2,744	2,801	
30호봉	4,063	3,727	3,403	3,174	2,923	2,759	2,812	
31호봉		3,752	3,428	3,199	2,947	2,786	2,840	

2013년 사회복지생활시설 종사자 수당 기준

(단위 : 천원)

수당의 종류	지급대상	지급액	지급회수 및 지급일
명절휴가비	전 종사자	봉급액의 120%	봉급액의 60%씩 연 2회, 설과 추석이 속한 달의 보수지급일(또는 설과 추석 전 15일 이내에 시설장이 정한 날)
시간외근무수당 등	규정된 근무시간 외에 연장근로를 한 종사자	연장근로시간당 [통상임금 (보수월액)×1 /209×1.5]	연장근로를 한 다음달 보수 지급일
가족수당	전 종사자	정액 20 (배우자 40)	세부기준은 공무원기준 준용

※『선임 생활지도원』승진 최소연한은 만5년(6년차)이상인 종사자 중에서 법인 및 시설의 제반여건 등을 감안하여 인원을 선정하며, 소요 기간은 법인 내 시설 및 동일 시설 근무경력을 우선 적용

붙임 10 철회(폐업) 신고서

[별지 제3호서식]

(앞 쪽)

<table>
<tr><td colspan="4">철회(폐업)신고서</td><td>처리기간
즉 시</td></tr>
<tr><td rowspan="2">신고인</td><td>성명(대표자)</td><td></td><td>주민등록번호</td><td></td></tr>
<tr><td>주 소</td><td colspan="3"></td></tr>
<tr><td rowspan="2">사업자</td><td>명 칭</td><td colspan="3"></td></tr>
<tr><td>사업장 소재지</td><td colspan="3"></td></tr>
<tr><td colspan="2">철 회 일</td><td colspan="3">년 월 일</td></tr>
<tr><td colspan="2">폐 업 일</td><td colspan="3">년 월 일</td></tr>
<tr><td colspan="2">사 유</td><td colspan="3"></td></tr>
<tr><td colspan="2">분 실 사 유</td><td colspan="3"></td></tr>
<tr><td colspan="5">「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와 동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신고(사업)를 철회(폐업)하고자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td></tr>
<tr><td colspan="4">※구비서류 : 1. 철회 또는 폐업 의결서(법인인 경우에 한합니다)
2. 기부식품 사용 또는 처분계획서
3. 신고필증
※ 안내 : 사업자 신고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분실사유를 작성하고 신고증을 첨부하지 아니하여도 됩니다.</td><td>수수료
없음</td></tr>
</table>

(뒤 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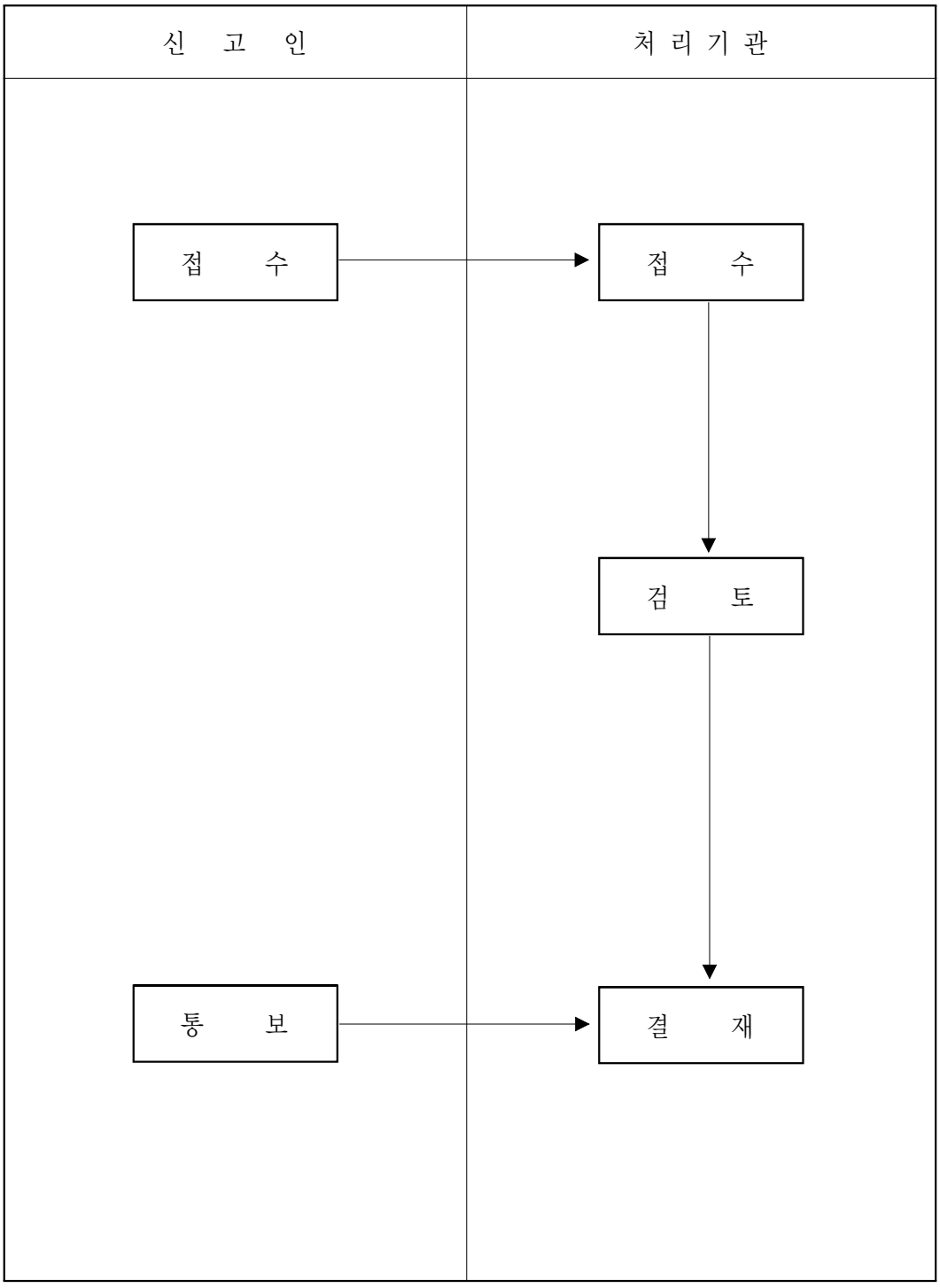

2 관련 법령

[일부개정 2011.4.28 법률 제9932호]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식품기부를 활성화하고 기부된 식품을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지원함으로써 사회복지의 증진 및 사회공동체문화의 확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식품"이라 함은 「식품위생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식품을 말한다.
2. "기부식품"이라 함은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지원할 목적으로 제공된 식품을 말한다.
3. "이용자"라 함은 기부식품을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4. "제공자"라 함은 기부식품을 이용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5. "사업자"라 함은 제공자 중 제4조의 규정에 따른 기부식품제공사업을 계속적으로 영위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신고) ①사업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업의 규모 및 범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한 사업자가 신고를 철회하거나 폐업하고자 하는 때에는 신고를 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철회 또는 폐업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의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기부식품제공사업) 기부식품제공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로 한다.

1. 기부식품의 모집·관리 및 제공
2. 식품기부를 활성화하기 위한 홍보
3. 그 밖의 기부식품 제공과 관련된 부수사업

제5조(기부식품의 모집 및 제공) ①제공자 및 사업자는 기부식품의 모집 및 제공 과정을 투명하게 하여야 한다.

②제공자 및 사업자는 기부식품을 모집하거나 제공함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기부식품을 안전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부식품의 모집 및 제공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기부식품의 무상제공) ①제공자 및 사업자는 이용자에게 기부식품을 무상으로 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이용자로부터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모집 과정에서 소요되는 직접 경비를 초과할 수 없다.

②제1항 단서의 직접 경비의 범위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국가 등의 지원)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식품기부 및 기부식품제공사업을 지원·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공자 또는 사업자에게 기부식품제공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③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은 필요한 경우 보유식품 중 일부를 제공자 및 사업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제8조(민·형사상의 책임감면) ①기부식품의 취식으로 인하여 이용자가 피해를 입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공자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신고한 사업자를 제외한다) 및 기부식품 제공활동에 참여한 자는 민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2. 「식품위생법」 제3조의 위생적 취급 기준을 위반한 경우
3. 「식품위생법」 제4조에 따른 위해식품 등인 경우

②기부식품의 취식으로 인하여 이용자가 사상(死傷)에 이른 때에는 제공자·사업자 그 밖에 기부식품 제공활동에 참여한 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형법」 제266조 내지 제268조의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제9조(이용자 보호)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제3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한 사업자는 제공된 식품의 취식으로 인하여 이용자의 생명·신체에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보험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0조(지도·감독 등) ①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공자 또는 사업자가 제5조제2항을 위반하거나 식품사고 등 식품으로 인한 중대한 위생상의 위해가 우려되는 때에는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공자 및 사업자의 사무소 또는 시설에 출입하여 검사 또는 질문하도록 하는 등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계공무원이 사무소 또는 시설에 출입하여 검사 또는 질문하는 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11조(시정명령 등) ①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공자 또는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1. 제3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한 사업자가 제3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 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2. 제5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사업장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1.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시정명령을 기간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제6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

③시장·군수·구청장이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장을 폐쇄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자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장의 폐쇄명령을 받은 후에도 계속하여 사업을 하는 때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장을 폐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1. 사업장의 간판 그 밖의 사업장표시물의 제거·삭제
2. 사업장이 적법한 사업장이 아님을 알리는 게시문 등의 부착
3. 사업장의 시설물 그 밖에 사업에 사용하는 용구 등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봉인

⑤시장·군수·구청장은 제4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봉인을 한 후 봉인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거나 당해 사업자 또는 그 대리인이 당해 사업장을 폐쇄할 것을 약속하거나 그 밖에 정당한 사유를 들어 봉인의 해제를 요청하는 때에는 봉인을 해제할 수 있다. 제4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게시문 등의 경우에도 같다.

⑥시장·군수·구청장은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당해 사업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급박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제4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는 그 사업을 할 수 없도록 하는데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한다.

⑧제4항의 경우에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이를 내보여야 한다.

제12조(벌칙) 제6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부식품을 제공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3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2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3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2. 제5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자 또는 검사·질문을 거부·기피·방해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이 부과·징수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부과권자는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부 칙 〈제7918호, 2006.3.24〉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사업자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정되는 대통령령에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다른 법률의 개정)** 사회복지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에 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너.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0.3.19 대통령령 제22075호]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자)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모집한 기부식품의 100분의 80 이상을 이용자(사업자가 속하는 기관·단체가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의 이용자를 제외한다)에게 제공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매주 3회 이상 제공할 것
2. 매주 60인 이상에게 제공할 것

제3조(사업자 신고)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사업자(이하 "당연신고사업자"라 한다)는 매년 제공하는 기부식품의 장부가액이 3억원 이상인 사업자로 한다.

제4조(신고의 기준) ①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신고하려는 사업자는 별표 1의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②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신고하려는 사업자는 별표 2의 당연신고사업자의 시설·설비 및 인력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③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신고의 절차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5조(기부식품 모집, 제공과정의 투명성 등) ①사업자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기부식품의 모집과정과 제공과정을 투명하게 하기 위하여 기부식품 모집과 제공에 관한 장부를 사업장에 비치하고, 기부식품을 모집한 때에는 영수증이나 그 밖에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②법 제3조에 따라 신고한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부식품 모집 및 제공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1. 사업자 명칭과 사업장 소재지
2. 기부식품의 종류·품목·수량, 가액(價額) 및 모집일자
3. 기부식품 중 이용자에게 제공된 식품의 종류·품목·수량, 가액 및 제공일자
4. 기부식품 제공자와 이용자가 개인에 해당되는지, 단체에 해당되는지의 구분

제6조(직접 경비의 범위 등)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직접 경비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부식품의 차량적재와 운반에 소요된 비용
2. 기부식품의 포장비용

제7조(식품기부 활성화 시책 수립·시행) 법 제7조제1항과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식품기부와 기부식품 제공사업의 지원·장려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식품기부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2. 기부식품제공사업 종사자 위생교육
3. 기부식품의 지역 내 적재적소 제공
4. 그 밖에 식품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과태료의 부과·징수) ①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은 법 제14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과태료금액 등을 서면으로 밝혀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 처분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부과권자는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처분 대상자에게 말로나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부과권자는 과태료의 금액을 정할 때에는 해당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등을 고려하되, 그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과태료의 징수절차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영은 2006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시설 및 설비의 기준 (제4조제1항관련)

1. 보관창고

가. 기부식품을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창고를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보관창고는 사업장 소재지에서 떨어진 곳에 설치할 수 있다.

나. 보관창고는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다른 용도로 사용 중인 창고를 분리하거나 구획하여 이용할 수 있다.

2. 운반차량

가. 냉동시설이나 냉장시설을 갖춘 적재고가 설치된 운반차량을 1대 이상 갖추어야 한다.

나. 냉동시설이나 냉장시설로 된 적재고의 내부는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고시한 식품의 기준과 규격에 따른 식품의 보존 및 보관 기준에 맞는 온도(이하 "적정온도"라 한다)를 유지하여야 하며, 시설 외부에서 내부의 온도를 알 수 있도록 온도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 적재고는 식육 등의 피가 흘러나오지 아니하여야 하고 냄새를 방지할 수 있는 구조여야 한다.

3. 냉장(냉동)시설

적정온도가 유지될 수 있는 냉장시설이나 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별표 2〕

당연신고사업자의 시설·설비 및 인력기준 (제4조제2항관련)

1. 보관창고

기부식품을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면적이 16.5제곱미터 이상인 창고를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보관창고는 사업장 소재지에서 떨어진 곳에 설치할 수 있으며,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다.

2. 설 비

가. 운반차량

(1) 냉동시설이나 냉장시설을 갖춘 적재고가 설치된 운반차량을 1대 이상 갖추어야 한다.

(2) 냉동시설이나 냉장시설로 된 적재고의 내부는 적정온도를 유지하여야 하며, 시설 외부에서 내부의 온도를 알 수 있도록 온도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3) 적재고는 식육 등의 피가 흘러나오지 아니하여야 하고 냄새를 방지할 수 있는 구조여야 한다.

나. 냉장(냉동)시설

적정온도가 유지될 수 있는 1,000리터 이상의 냉장시설이나 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 인 력

기부식품제공사업을 수행하는 전담인력 1인 이상 및 자원봉사자 등 보조인력 2인 이상이 있어야 한다.

[별표 3]

과태료 부과금액(제8조제3항관련)

위 반 사 항	근거법령	과태료
1. 법 제3조제2항을 위반하여 사업자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법 제14조제1항 제1호	300만원
2. 법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기부식품의 모집 및 제공 과정을 투명하게 하지 아니한 자	법 제14조제1항 제2호	
가. 제5조제1항에 따른 장부를 사업장에 비치하지 아니하거나 영수증 등을 보관·작성하지 아니한 자		200만원
나. 제5조제2항에 따른 기부식품 모집 및 제공결과를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개하지 아니한 자		150만원
3.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기부식품을 안전하게 취급하지 아니한 자	법 제14조제1항 제2호	300만원
4.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를 한 자,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또는 검사·질문을 거부·기피·방해한 자	법 제14조제1항 제3호	300만원

[일부개정 2009.9.1 보건복지부령 제18호]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과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자 신고 등) ①「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신고하려는 사업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업자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2. 사업계획서(이용자로부터 대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3. 사업장을 설치할 토지와 건물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각각의 서류

②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때에는 영 제4조에 따른 시설·설비 등의 기준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3조(철회 · 폐업신고 등)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항에 따라 사업자 신고를 철회하거나 폐업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철회 · 폐업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철회 또는 폐업 의결서(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2. 기부식품 사용 또는 처분계획서
3. 신고필증

제4조(장부의 비치) 사업자가 영 제5조제1항에 따라 사업장에 비치하여야 하는 장부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다.

제5조(시정명령)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 · 광역시장 · 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시정을 명할 때에는 위반사실과 시정기간을 적은 서면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제6조(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8조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신청방법과 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06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